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시중구태평로1가31번지 / 전화(02) 731-6556 / 전송(02)731-6562
 처리부서 : 법무담당관(시청본관 3층) / 담당 : 김 현 주

문서번호 법무 11010- 116

시행일자 1998. 1. 13

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		시 장
보존		640
기획관리실장	전결	
법무담당관	승	
법제제장	승	
기안	김현주	
		협조

제목 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발령

1.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98. 1. 15 (목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예규 제640호

예규제 640 호

첨부 : 1. 발령목록 1부.

2. 발령안 1부.끝.

서울특별시 장

기획관리실장 기안

(제2안)

수신 : 공보담당관

제목 : 예규시보게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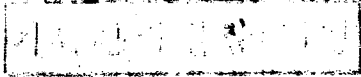
1.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98. 1. 15 (목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예규 제640호

- 첨부 : 1. 발령목록 1부.
2. 발령안 1부.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

(제3안)

수신 : 농수산유통과장

제목 : 예규발령 통보

1.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

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조치하였
으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98. 1. 15 (목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예규 제640호

- 첨부 : 1. 발령목록 1부.
2. 발령안 1부.끝.



서 울 특 별 시 장



예 규 발 령 목 록

1건(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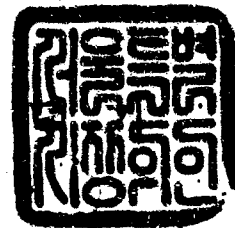
연 번	법 규 명	번 호	주 관 부 서
1	양재통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 (개정)	제640호	농수산유통과
	“ 이 하 여 백 ”		

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

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8년 1월 15일

서울특별시 시장 직무대리 강



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

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('97. 12. 5)으로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기준 하향조정
- "500가마/80kg" ⇒ "400가마/80kg"

※ 1997. 12. 17 업무규정 개정내용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 받았음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

「③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서울특별시예규 제 호

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증개정규정안

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중 “500가마(가마당 80kg, 법인은 2천가마)”를 “400가마(가마당 80kg, 법인은 2천가마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2조(최저 거래기준) ①도매시장 중도 매인의 월 최저거래기준은 500가마 (가마당 80kg. 법인은 2천가마)로 한다.</p>	<p>제22조(최저 거래기준) ①----- ----- 400가마 (가마당 80kg. 법인은 2천가마)-----</p>

서울특별시

우)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02) 3707-9393 / 전송 02) 3707-9399
 처리부서 : 농수산유통과(서소문별관 9층 902호) 담당 : 김 달 호

문서번호 농유 51160-3038
 시행일자 1997. 12. 29 ()

수신 법무담당관

선 결	법무담당관 3	지	
접	일자 시간 1997. 12. 30.	시	
수	번호 4553	결	법재계장 201
처	리 과	재	
달	달 자	공	
		람	

제목 예규(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) 발행 외 퇴 (개정) 예규

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을 별첨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
 하고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따로붙임 : 1. 방침서 사본 1부.
 2.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. 끝.

농수산유통과장 이정재

서울특별시

우113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02) 3707-9393 / 전송 02) 3707-9399
 처리부서 : 농수산물유통과(서소문빌딩 9층 902호) 담당 : 김 달 호

문서번호 농유 51160- 3028

시행일자 1997. 12. 29 ()

수신 내부결재

취급		시 장
보존		
부 시 장	전결	
지역경제국장	대결	
농수산물유통과장		법무담당관
기안	진 명 수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양계동양곡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9/19

1.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(조례제3440호-'97.12.5) 및 농림부 관리51160-756('97.12.17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가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에서 의결·이송('97.11.17)되어, '97년 제17회 조례·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'97.12.5 서울특별시조례 제3440호로 공포 되었기에,

3. 관련 도매시장인 양계동양곡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조례에 맞게 개정 하고자,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 인 농림부의 승인을 득한 후, 별첨과 같이 동 업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따로붙임 : 1. 서울특별시양계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.
 2.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(조례 제3440호-'97.12.5) 1부.
 3. 농림부 공문(관리51160-756호)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: 법무담당관

제목 : 예규(서울특별시양계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) 발령 의뢰

서울특별시양계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을 별첨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 하고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따로붙임 : 1. 방첩서 사본 1부.
 2. 서울특별시양계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. 끝.

농 수 산 유통 과 장